



원본: 영어

No.: ICC-01/11
날짜: 2011년 6월 27일

제 1 예심원

담당: 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겐, 부장판사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
판사 쿠노 타르푸서

리비안 아랍 자마히리야 사태

공개문건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에 대한 체포영장

재판소 규정 31 조에 의거, 결정사항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통보됨

검사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검찰총장
파투우 벤소우다, 검찰차장

변호인단

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단

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단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피해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조정 및 보상
신청인**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

피고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

국가 측 대리인

법정 조연자

사무처

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

사무차장

디디에르 프레이라

변호 지원부

피해자 및 증인단

구치부

피해자 조정 및 보상부

기타

국제 형사 재판소 (이후 “재판소” 제 1 예심원 (이후 “예심원”)은;

로마협약 (이후 “협약”) 13조 (b)에 의거하여, 2011년 2월 26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70에 따라 2011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한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이후 “리비아”) 사태가 재판소 검찰총장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인지하고;

2011년 5월 16일 재판소 검찰총장이 신청한 “Prosecutor’s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58 as to Muammar Mohammed Abu Minyar GADDAFI,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검찰총장 측 청구”)¹와 2011년 2월 15일 이후 리비아 전역, 특히 트리폴리와 벵가지, 미스라타에서 리비아 국가 기관 및 보안군으로 하여금 민간인을 박해하고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려 반인륜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이에 협약 7조 (1)항 (a)와 (h) 위반 및 협약 25조 (3)항 (a)에 따른 해당 범죄행위의 수괴 혐의로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에 대해 검찰총장이 요구한 체포영장 발부 신청을 인지하고;

검찰총장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범죄를 사이프 알 이슬람 가타피가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와 해당인의 체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협약 58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찰총장이 청구와 함께 제시한 증거 (“증거자료”)와 정보를 검토하였으며

협약 7조 (1)항 (a) 및 (h)와 19조, 25조 (3)항 (a), 58조를 인지하고;

검찰총장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예심원이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 건(件)이 재판소 관할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과 협약 19조 (2)에 따른 해당 건의 증거허용성

¹ ICC-01/11-4-Conf-Exp 및 부속 문건.

제한 요소들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없이 현 단계에서 예심원이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 건의 증거허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협약 19조 (1)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명백한 이유나 자명한 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2011년 초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대통령이 축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리비아 정부 고위층이 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2011년 2월 무아마르 모하메드 아부 민야르 가다피 정권 (이후 “가다피 정권”)에 반대하여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 사태를 막고 진압하려는 국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를 예심원이 발견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2011년 2월 15일부터 적어도 동년 2월 28일까지 위에 언급한 국가 정책에서 조장된 바에 따라 리비아 보안군²이 가다피 정권에 반대하여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과 체재 반대자로 간주된 사람에 대해 리비아 전역에서 늘 하던 상투적인 수법에 따라 공격을 자행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안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은폐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보안군 공격으로 발생한 시위대의 사상자 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1년 2월 15일과 그 이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수 백명의 시민들이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따라서 협약 7조 (1)의 해석에 따라, 상기 국가 정책을 조장함으로써 가다피 정권에 반대하여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과 체재 반대자로 간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² 이후 “보안군”이라 함은 리비아 군과 경찰, 군 정보부, 국내 및 해외 정보부, 혁명 위원회 및 산하 기관, 혁명 친위군, 인민 보안군, 혁명 전사 민병대, 여단 및 민병부대로 이루어진 리비아 보안 및 군사 조직을 정의한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트리폴리와 미스라타, 뱅가지는 물론, 알 베이다와 더나, 토브루크, 아즈다비아와 같은 뱅가지 인접 도시들을 비롯, 리비아 전역에서 2011년 2월 15일부터 적어도 동년 2월 25일까지 리비아 보안군이 가다피 정권 반대 시위 참여 시민들과 체제 반대자로 간주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와중에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가다피 정권에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민간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는 등 비 인간적인 행위가 2011년 2월 15일부터 적어도 동년 2월 28일까지 뱅가지와, 트리폴리, 미스라타 및 인접 도시들을 비롯, 리비아 영토 내 여러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무아마르 가다피의 공표되지 않은 후계자이자 가다피의 측근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검찰총장 측 청구에 관련된 바, 재정 및 병참을 포함해서 국가 기관 중 주요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고 실제로로 수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가 그의 아버지 무아마르 가다피와 모의하고 실행한 행동들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측근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가다피정권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휘하였다고 추론될만한 믿을 수 있고 타당한 근거가 검찰총장이 제출한 증거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가 상기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핵심적인 주요 역할을 맡아 해당 계획의 실행에 기여하였고 해당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가 (i) 상기 범죄 행위의 실질적인 요소들을 자행하고자 의도하였으며 (ii) 자신을 포함한 측근세력을 동원하여 무아마르 가다피가 제정한 국가 정책을 실시하느라 행한 스스로의 행위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iii) 자신이 리비아 국가 조직 내 고위 지도자이며 국민들에 대해 완벽하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iv) 해당 범죄 행위의 실질적 요소들이 실현되는 결과를 초래한 계획의 시행을 인지하고 수용하였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협약 25조 (3)항 (a)에 의거, 특히 뱅가지와 미스라타, 트리폴리 및 인접 도시를 비롯, 리비아 영토 내 여러 지역에서 2011년 2월 15일부터 최소 동년 2월 28일까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보안군에 의해 자행된 아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가 간접종범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 i. 협약 7조 (1)항 (a)의 해석에 따라 반 인륜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및
- ii. 협약 7조 (1)항 (h)의 해석에 따라 반 인륜범죄에 해당하는 박해

협약 58조 (1)에 의거, (i) 그의 재판소 출두를 확실히 하고 (ii) 조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 특히 보안군에 의해 자행된 범죄 행위 은폐를 지휘하기 위해, 그가

계속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고 (iii) 리비아 국가 조직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과 권력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재판소 관할권 내에서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고려하였다.

상기 이유를 근거로, 예심원은

가다피 국제 자선 및 개발 기금 명예 총재이자 실질적으로 리비아 수상직을 수행 중인 리비아 트리폴리 출신의 1972년 6월 25일생,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 (“Qaddafi”나 “Qadhafi”, “Kadafi” 등으로도 표기)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진을 첨부하여 발부한다.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었으며 영어판이 공식문건임.

서명

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경

부장판사

서명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

서명

판사 쿠노 타르푸서

2011년 6월 27일 월요일

네덜란드, 헤이그